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4382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1. 주식회사 ○○종합건설
2. 나○○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1.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9.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5,07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나○○은 2009. 2. 9.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산97-1(2010. 3. 23. 지산동 1138-3으로 등록 전환됨,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2009. 6. 초경 피고 회사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4억 원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09. 11.경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직접 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직불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4.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2010. 6.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은 4억 원이 아니라 6억 1,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잔여 공사대금 및 2009. 10.경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마. 이 사건 전소의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2146)은 이러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위 사건의 2심(대구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1430)은 원심의 결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4억 원이며, 2010. 4. 23.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3심 역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결국, 위 사건은 피고 회사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53543).

바. 한편,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직후 피고 회사는 위 전소에서 주장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은 5억 1,900만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예금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7. 12.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3244 채권가압류

○ 채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지범새마을금고

○ 가압류대상: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은행, 지범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3246 부동산가압류

○ 채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원고

○ 가압류 대상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 ②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9-7 토지(원고 소유 주택 대지,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
- ③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9-7 지상건물(원고 소유 주택, 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
- ④ 대구 수성구 지산동 산97

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30.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1타경14411)이, 2011. 6. 1.에는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1타경14657)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2. 10. 김○○에게 매각대금 13억 3,6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아.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보다 앞선 2011. 4. 25.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5056)이, 2011. 6. 1.에는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7038)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3. 9. 한○○에게 매각대금 6억 4,2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자. 위 각 경매절차가 진행될 무렵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감정가는 1,908,072,100 원,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감정가는 675,710,85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제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그 부당한 집행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상,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나○○의 업무집행에 따른 것이고, 피고 나○○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의 전후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나○○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은 6억 1,6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 회사는 4억 3,9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것인데, 전소의 2심 법원이 사실오인을 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원

고를 상대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 집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4억 원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6억 1,600만 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음에도 이 사건 전소 제2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회사 패소 판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 집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에 대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 매각됨으로써 입은 손해(주위적 주장)

1) 주장

원고는 대구은행 등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함으로써,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572,072,100원(=1,908,072,100-1,336,000,000원),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 33,000,000원(=675,000,000원-642,00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 나○○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605,072,100원(=572,072,100+33,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 중 예금채권 이자와 민사 법정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는 청구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또는 예금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 탓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새로운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부동산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저가 매각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가 부동산 또는 예금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부동산의 임의경매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8, 9, 10,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국민은행, 대구은행, 지범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010. 4. 15. 12억 원, 이 사건 가압류 이후인 2010. 7. 22.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1. 1. 21.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대구은행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② 이 사건 가압류 이전 원고의 처 강은주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1. 2. 24.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③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는 이미 감정가를 초과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는 감정가의 60%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13건의 압류 및 가압류가, 제3, 4부동산에 관하여는 11건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 ⑤ 이 사건 가압류 중 예금가압류 당시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은 3,121원,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은 1,739,124원, 지범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 잔액은 274원에 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소에서 패소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것이고 피고 회사는 위 임의경매신청 이후 전소 제1심 판결문에 따라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과 경매절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따라 원고의 대구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대구은행 성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감정가보다 저가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른 결과인 이상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가보다 저가로 매각된 것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과 어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저가 매각으로 말미암은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이 사건 가압류 집행과 경매절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설사 원고가 주위적 주장에서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피고들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본안소송 외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하여 가압류 결정이 집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2, 3,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6억 1,600만 원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에 찍힌 원고의 인영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김소영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막도장을 조립하는 모형으로 원고의 도장을 조립하여 찍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대구은행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2부동산 건물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설정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및 전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때문에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청구가 배척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가압류 집행에 따른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3.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손광진

 판사 김선희